

1. 개정이유

스크린골프장 및 스키장에서 빈발하는 안전사고 유형과 관련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의 시설·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일반 국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중 골프 종목의 시설 기준 중 타석 간격 기준 신설 및 천장의 높이 기준 보완(별표4)
- 나. 스키장업의 안전·위생 기준 중 스키장 안전모 착용에 관한 사항 구체화(별표6)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더목1) 제1항 시설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 타석 간의 간격은 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천장에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석으로부터 설비까지의 높이가 2.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이용자가 타석에서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시설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5)을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6)(종전의 (5)) 중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이용자가 리프트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리프트 탑승구역에서 안전모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리프트 탑승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제2호더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체육시설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1) 골프 종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th style="text-align: center;">시설기준</th></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필수시설 ①운동시설</td><td>○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u>타석 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u>,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td></tr> </table>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운동시설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u>타석 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u> ,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별표 4] 체육시설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1) 골프 종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th style="text-align: center;">시설기준</th></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필수시설 ①운동시설</td><td>○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 <u>타석 간의 간격은 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u>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u>천장에 설비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석 으로부터 설비까지의 높이 가 2.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u></td></tr> </table>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운동시설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 <u>타석 간의 간격은 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u>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u>천장에 설비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석 으로부터 설비까지의 높이 가 2.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u>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운동시설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u>타석 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u> ,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운동시설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 <u>타석 간의 간격은 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u>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u>천장에 설비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석 으로부터 설비까지의 높이 가 2.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u>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나. 스키장업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u>하며</u>,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나. 스키장업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u>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이용자가 리프트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리프트 탑승구역에서 안전모 착용 여부를 확인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리프트 탑승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u> <u>(6)</u>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제2호더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